고령(만65세~79세) 투자자확인서(장외파생상품용)

■ 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 안내 확인		
● 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본인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자의 연락처 제공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.		
교육시의 한국사 제이들의 이용을 두 있습니다. □ [조력자 방문] 조력자 연락처 제공 □ [조력자 미방문]		
■ [조력자 방문] 조력자 연락처 작성 (필수)개인(신용)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【조력자 성명 및 연락처 제공용】		
(글 구 / 한 (한 장 /) 6 로 구 (송)하나은행 귀중	- 1 · 이용 용의시(조극시 중중 중 한국시 제중중	
귀 행과의 비여신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귀 행이 조력자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		
수집 · 이용 목적	-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연락처 확보 -투자상품 가입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성명 확보	
보유 및 이용기간	- 장외파생상품 만기일까지 보유·이용	
	* 위 보유기간에서 장외파생상품 만기일이란 개별거래의 민 기본 계약이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.	가기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객의 장외파생상품
거부 권리 및 불이익	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위 개인(신용)정 지정을 위한" 필수적 사항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그	
수집 · 이용 항목		
■개인(신용)정보		
■일반개인정보	조력자 성명 및 연락처	
	위 개인신용정보 <u>수집 · 이용</u> 에 동의하십니까?	등의하지 않음 등의함
※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		
조력자와 고객과의 관계		
	조력자 연락차	 :
■ 거래 목적 및 숙력기간 제외 대상 사전 확인		
● 본인은 만 65세 이상 투자자로 해당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현재 보유한(혹은 보유 예정인) 자산(혹은 부채)에 대한 위험회피 (헤지) 목적으로 거래할 것이며, 이에 따라 투자 숙력기간 부여 제외 대상 임을 확인합니다.		
● 본인은 하나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, 본 거래		
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.		
■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설명직원 사전확인		
ㅇ하나은행	지점 관리직 직원(영업점장 및 관리자, 준법감시담당자 및	드는 감사통할책임자) 욘(는)
고령투자자 고객	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 직원명 :	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음. 서명(인)
■ 본인은 본 자료를 (<u>수령)</u> 하고 자료의 (<u>내용)</u> 에 대해 (설명) 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		

일

고객명:

• 하나은행

서명(인)

년

20

월